

1. 개정이유

자동차 소유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동차 정기검사 수검 기간을 확대하고, 자동차 제작기술의 발달로 인한 자동차 내구성·성능 향상 등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여 비사업용 승용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자동차 정기검사 수검 기간을 현 63일에서 122일로 확대(안 제77조 제2항)

나. 신차 등록 후 최초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점을 신조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해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연장(안 별표 15의2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국토교통부령 제 호

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7조제2항 중 “전후 각각”을 “전 90일 이내, 후”로 한다.

별표 15의2의 승용자동차의 비사업용의 검사 유효기간란 중 “4년”을 “5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검사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)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규등록을 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7조(정기검사의 신청 등) ① (생 략)	제77조(정기검사의 신청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정기검사의 기간은 검사유효 기간만료일(제75조의 규정에 의 하여 검사유효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)전후 각각 31일 이내로	②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전 90일 이내, 후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하며, 이 기간내에 정기검사에 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에 정기검 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.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